

공정은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ww.ftc.go.kr

한눈에 보는 공정거래제도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목차

Part 1

공정거래제도 일반

05

I.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06

1. 경쟁 촉진 07
2.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 18
3.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23
4. 경제력집중 억제 31

II. 신뢰받는 기관 운영

35

1. 적법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조사 36
2.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38
3. 엄정한 과징금 산정·부과 39
4.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노력 40

III.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41

1. 성격 및 기구 42
2. 주요 연혁 46
3.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47
4. 관련 제도 - 동의를결 48



Part 2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 51

I. 기업규제 합리화	55
1.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55
2. 중소기업 경쟁법 규율 합리화	62
3. 균형감 있는 甲乙관계 제도운영	66
II. 신속·정확한 법집행	67
1.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집행	67
2. 신속하고 투명한 법집행	69
3. 법집행 신뢰성 제고	71





한눈에 보는
공정거래제도

Part 1

공정거래제도 일반

- I.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 II. 신뢰받는 기관 운영
- III.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I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1. 경쟁 촉진
2.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
3.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4. 경제력집중 억제



1 경쟁 촉진

우리나라 헌법(제119조)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7

▣ 시장지배적 사업자(통칭 ‘독과점 사업자’)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일정한 거래 분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 ▲**관련 지리적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필요

↳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추정 기준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
 - 3개 이하 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그 각 사업자*(10% 미만 사업자는 제외)
- * 단, 연간 매출액(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출고조절)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사업활동 방해)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진입제한)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경쟁자 배제, 소비자이익 저해)

▣ 범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가격인하, 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
- (형사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심결 사례

① Q사 모뎀칩셋 건[1차('09.12월), 2차('17.1월)]

- ✓ Q사가 ^①1차 경쟁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②2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한 행위,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②2,245억원, ①1조 311억원)

② G사 앱마켓 건('23.7월), OS 건('21.12월)

- ✓ G사가 ^①앱마켓 건 모바일 게임사에게 자신의 앱마켓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고 경쟁 앱마켓에는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②OS 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게 경쟁 운영체제(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②421억원, ①2,249억원)

③ N사 쇼핑 건('21.1월), 부동산 건('21.1월)

- ✓ N사가 ^①쇼핑 건 비교쇼핑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 ^②부동산 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

➔ 시정명령, 과징금(②266억원, ①10억원)

④ K사 및 L사 이윤압착 건('15.2월)

- ✓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K사와 L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는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K사20억원, L사45억원)

⑤ M사 메신저 끼워팔기 건('06.2월)

- ✓ M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OS)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PC 운영체제(OS)에 미디어 프로그램과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325억원)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공정거래법 제9조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2

□ 기업결합의 수단 및 형태

- (결합수단) ①주식취득, ②임원겸임, ③합병, ④영업양수, ⑤회사설립 참여
- (결합형태)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당사회사들 간의 관계에 따라 ▲수평결합(동종 업종의 경쟁사업자 간 결합), ▲수직결합(생산·유통 단계에서 인접해 있는 사업자 간 결합),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결합)

□ 기업결합 신고제도(회사 → 공정위 신고 단계)

- (신고 요건) 결합당사회사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 (규모 기준)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 ※ (예: 신고대상 O) 3천억원 회사가 500억원 회사 인수, 300억원 회사가 4천억원 회사 인수
 - (예: 신고대상 X) 5천억원 회사가 200억원 회사 인수, 2천억원 회사가 500억원 회사 인수
 - (거래금액 기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미만인 회사를 결합하더라도, ▲거래금액(기업결합의 대가)이 6천억원 이상이고, ▲해당 피취득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
 - *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등
- (신고 시점) 기업결합 이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전신고'* 및 기업결합 이행 후 신고를 하는 '사후신고'로 구분
 - * 사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심사결과 통지 전 기업결합 이행행위(주식취득 등)를 해서는 안됨(위반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전신고)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②임원겸임 이외의 기업결합①주식취득, ③합병, ④영업양수, ⑤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기업결합 이행일(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 임원 선임 의결일,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대금 지급완료일 등) 전까지 신고 필요

- (사후신고) 대규모회사가 ②임원검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하거나,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신고기한) 기업결합 이행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필요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신고기한 후 신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기업결합 심사제도(심사 단계)

- (심사기간) 기본 심사기간은 30일,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총 120일)

-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

- (심사 유형) '간이심사'와 '일반심사'로 구분

- (간이심사)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간이심사로 분류하여 사실관계 등 간략한 신고내용만 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

* 계열사 간 합병, 지배력 미형성,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 국내 영향이 없는 경우 등

- (일반심사) 간이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획정, 시장현황, 경쟁제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처리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심결 단계)

- (시정조치) 심사결과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불허하거나(결합 금지), 일정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승인(조건부 승인)

- (결합 금지) 가장 강한 조치로서 해당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

- (조건부 승인) 구조적 조치(자회사 또는 보유자산 매각 등), 행태적 조치(일정 기간동안 가격인상 제한 등)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기업결합은 승인

- (시정조치 불이행시 제재조치) 이행강제금 부과(행정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형사벌칙)

심결 사례

① K사-S사 건('24.5월)

- ✓ K사·K엔터테인먼트사가 S사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 조건부 승인, 행태적 시정조치(음원 공급 거절 금지 등) 부과

② M사-G사 건('24.3월)

- ✓ 공무원 학원 시장 2위 M사가 1위 G사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수강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 결합 금지

③ K항공-A항공 건('22.5월)

- ✓ K항공이 A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 중복노선 중 총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 조건부 승인, 구조적 시정조치(슬롯 및 운수권 이전), 행태적 시정조치(가격인상 제한, 향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 등) 부과

④ B앱-Y앱 건('21.2월)

- ✓ D사(Y앱)가 W사(B앱)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배달앱·배달대행·공유주방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 조건부 승인, 구조적 시정조치(D사코리아 지분 전부매각) 부과

⑤ S사-C사 건('16.7월)

- ✓ S사가 C사의 주식 30%를 취득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유료 방송 시장,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 결합 금지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7

- **[부당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

 - (성립요건) '둘 이상의 사업자' + '합의' + '경쟁제한성'
- **금지되는 카르텔 유형**

①가격담합, ②거래조건담합, ③수량담합, ④시장분할담합, ⑤설비제한담합,
⑥종류·규격제한담합, ⑦조인트벤처담합, ⑧입찰·경매담합, ⑨기타·정보교환담합

※ (i) 카르텔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경성카르텔'이라고 하고 (주로 ①,③,④,⑨ 유형), (ii)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성카르텔'이라고 함.
- (i) '경성카르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ii) '연성카르텔'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비교형량을 통해 위법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사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Leniency Program)

 -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증거와 함께 스스로 신고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구분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자진신고자 ^{조사개시前}	1순위	면제	면제	면제
	2순위	감경	50% 감경	면제
조사협조자 ^{조사개시後}	1순위	감경 또는 면제	면제	면제
	2순위	감경	50% 감경	면제

심결 사례

① 가구 입찰담합 건('24.3월)

- ✓ 31개 가구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약 10년간('12년~'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

* 싱크대, 불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가구(설치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

➔ 시정명령, 과징금(총 931억원)

② 백신 입찰담합 건('23.8월)

- ✓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170건의 백신 입찰에서('13.2월~'19.10월)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

➔ 시정명령, 과징금(총 409억원)

③ 독일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건('23.4월)

- ✓ 4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경쟁 확대에 인한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요소수 사용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

* 요소수는 유해물질(질소산화물, NOx)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며, 요소수 사용량을 제한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성능도 그만큼 제한됨

➔ 시정명령, 과징금(총 289억원)

④ 공공분야 철근 입찰담합 건('22.11월)

- ✓ 국내 철근 시장의 약 99%를 차지하는 11개 제강사들이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입찰에서('12년~'18년)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최저 투찰가격을 공유

➔ 시정명령, 과징금(총 2,565억원), 7개사 법인·개인 고발

⑤ 육계 담합 건('22.3월)

- ✓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의 77.1%를 차지하고 있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총 45차례에 걸쳐('05.11월~'17.7월)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

*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됨

** 부화·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

➔ 시정명령, 과징금(총 1,758억원), 5개사 법인 고발

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7

▣ [불공정거래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

- ①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 거래거절
- ② 차별적 취급 -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 ③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 ④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위계·기타에 의한 고객유인
- ⑤ 거래강제 -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 거래강제
- ⑥ 거래상 지위 남용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 ⑦ 구속조건부 거래 -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 ⑧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 ⑨ 부당한 지원행위 - 특수관계인 등에 자금·자산·인력 등 지원

▣ 범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
*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사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⑨부당한 지원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 지위 남용, ⑧사업활동 방해)

▣ 안전지대(Safety Zone)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법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만 적용 가능

심결 사례

① J사 부당한 고객유인 건('23.11월)

- ✓ 의약품 제조·판매사인 J사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현금 및 물품·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14.2월~'23.10월)

➔ 시정명령, 과징금(299억원), 법인·개인 고발

② S사 거래강제(사원판매) 건('20.1월)

- ✓ S사가 매년 설·추석 명절에 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14.8억원)

③ B사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 건('23.10월)

- ✓ 세계 2위 칩 설계 사업자인 B사가 구매자인 S사에게 부품 선적 중단, 구매주문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기비용 부품 공급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187억원)

④ N사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강제) 건('13.10월)

- ✓ N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124억원), 법인·개인 고발

⑤ M사의 사업활동 방해 건('23.8월)

- ✓ M사가 기존에 상당기간 갈등을 겪어온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신생 경쟁사업자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의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4억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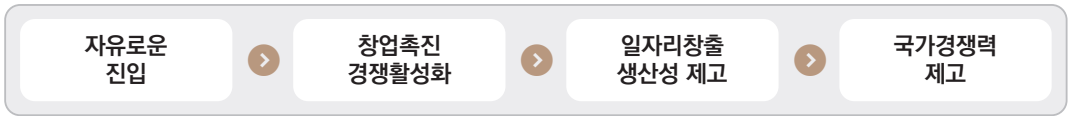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법 제4조

시장구조개선정책과 044-200-4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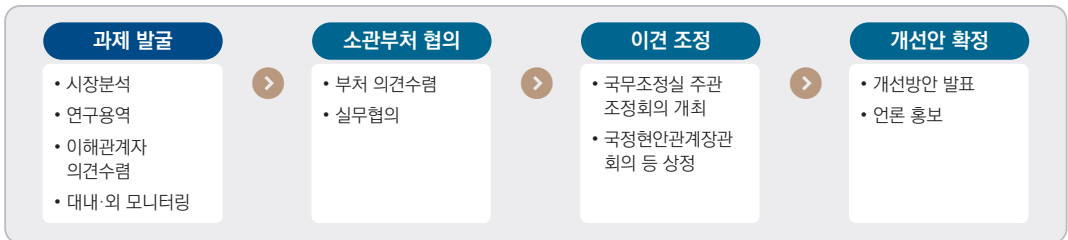
-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불합리한 진입장벽,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등 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



- ▣ **업무 절차**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흐름도



최근 개선사례

- ▣ **(공유차 전용주차구획 설정)** 공유주차장 내 공유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불명확
 - ➔ 주차장법상 **공유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도입하여 교통접근성 개선, 편도반납 활성화 등 **이용자 편의성 증대**(24.1월, 주차장법 개정)
-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개선)**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그 공동이용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자신의 발전소로 공급)의 불이익 우려
 -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 제고** (23.12월,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인증대체부품'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 이용률 저조, 완성차의 OEM부품 고착화
 -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수요촉진**을 위해 '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으로 **법적용어 변경** (24.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2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甲)가 상대방(乙)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자생적 발전역량**이 **약화**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기반**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의 결정이나 감액, 기술유용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전국 단위 영업 등을 통해 막강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인 입점업자나 납품업자들이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내하기도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제45조)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하도급법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5

-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생산활동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납품받는 거래 방식

 - (적용대상) <원사업자> 대기업·중소기업* ⇄ <수급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연간 매출액(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또는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등)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 ▣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①서면 발급 및 보존, ②선급금·하도급대금 지급, ③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④공급원가 변동 등 대금 조정 협의, ⑤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등
 - (금지사항) ①부당한 특약,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부당한 위탁취소, ④부당 반품, ⑤대금 감액, ⑥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⑦기술유용, ⑧보복조치, ⑨탈법행위 등
 - (징벌적 손해배상)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부당한 위탁취소, ④부당 반품, ⑤대금 감액, ⑧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⑦기술유용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

- ▣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하도급대금 지급, 행위중지, 특약 삭제·수정, 재발방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 (형사벌칙)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대부분의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 ▲3억원 이하 벌금(보복조치 등), ▲1.5억원 이하 벌금(탈법행위 등)

심결 사례

① G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건('22.9월)

- ✓ G사가 9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당 요구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243억원)

② H사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건('20.10월)

- ✓ H사가 45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80.5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115억원), 법인 고발

③ D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건('21.2월)

- ✓ D사가 18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위탁하여 이를 진행토록 하고 공사종료 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153억원), 법인 고발

④ C사 기술유용 건('22.5월)

- ✓ C사가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하고 거래선을 변경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9.2억원), 법인·개인 고발

⑤ H사 기술유용 건('23.6월)

- ✓ H사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자사 카메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1억원), 법인·개인 고발

2

대규모 유통업 거래질서 확립

대규모유통업법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0

○ 대규모 유통업자

-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사업자*

* 자신이 임대한 매장의 소비자 판매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소핑몰·아울렛 등 매장임대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

○ 대규모 유통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서면 발급 및 보존

※ 대규모 유통업자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납품업자가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15일 내에 유통업자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 (금지사항) ①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②상품 수령 거부·반품, ③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④부당한 종업원 사용, ⑤배타적 거래 강요, ⑥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및 경영활동 간섭, ⑦불이익 제공, ⑧보복조치 등
- (징벌적 손해배상) ①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②상품 반품, ④부당한 종업원 사용, ⑧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

○ 범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재발방지, 상품대금 지급, 계약조항 삭제·수정,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 이하)
- (형사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⑥배타적 거래 강요, ⑥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및 경영활동 간섭, ⑧보복조치)

심결 사례

① C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23.12월)

- ✔ C사가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행사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등

➡ 시정명령, 과징금(18.9억원), 법인 고발

② L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20.1월)

- ✔ L사가 ▲서면 약정 없이 저가로 삼겹살을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공문을 통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 등

➡ 시정명령, 과징금(408억원)

3

가맹·대리점 거래질서 확립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0 |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0

가맹거래 및 대리점거래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상표·상호 등) 사용 일정 품질기준, 영업방식 준수 	영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영업표지 사용 의무 없음 인테리어 등 독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된 지시·판매전략 적용 가맹금 납부 	영업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점 계약 외 제품 판매 가능 제품 구매대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금 총액이 6개월 간 100만원 미만 (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등 가맹·금융투자업·대규모유통 거래 	
	적용제외		

의무 및 금지사항, 범위반시 제재조치

가맹본부		대리점 공급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서 교부(계약체결 14일 전) 및 보존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서 교부(계약체결 즉시)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불공정행위(거래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경영활동 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익제공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과장정보 제공 보복조치 	징벌적 손해배상(3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강제 보복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하) ▲5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허위·과장 정보제공),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보복조치 등) 등 	범위반시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범위반 금액 이하) 2년 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 	

※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및 반환 의무,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등이 부과되며, 가맹점주에게는 계약갱신 요청권(최대 10년) 등이 보장됨

심결 사례

1 E사 가맹사업법 위반 건('18.12월)

- ✓ E사가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을 계약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종료, ▲가맹점주가 자기 비용으로 배포하는 홍보 전단지를 자신에게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14.6억원)

2 S사 대리점법 위반 건('20.10월)

- ✓ S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알뜰폰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계약기간 중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등
- ⦿ 시정명령, 과징금(3.5억원)



③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 정책은 과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보호론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자주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주권론적 관점’**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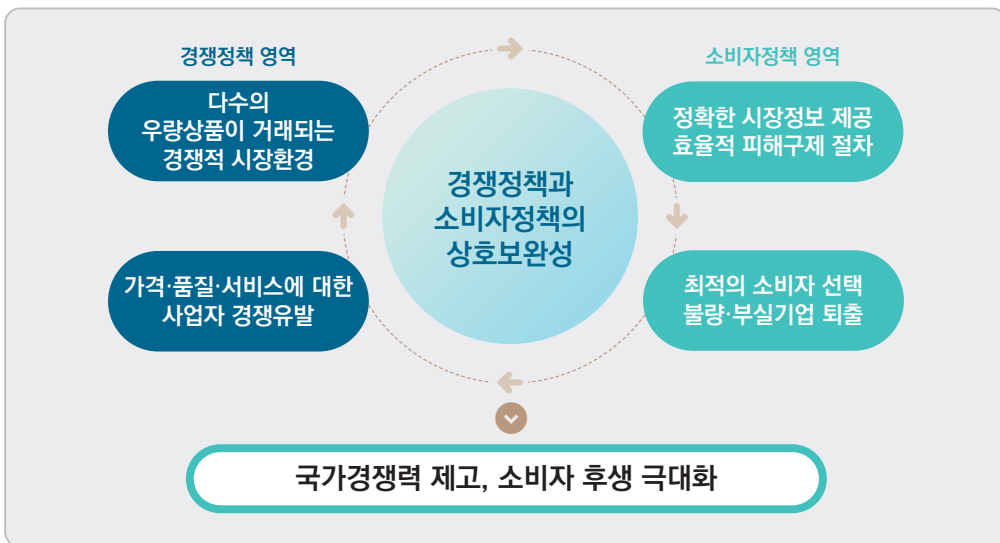
아울러, 특수한 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

- 소비자정책은 ①거래 적정화, ②안전성 보장, ③정보제공, ④소비자 교육, ⑤피해구제 등 5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유기적인 시책 (관련 부처·기관 간 전문성 조화 필요)

구분		주요 법령		관련 부처·기관
		공정위 소관	타부처 소관	
규제 행정	거래 적정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산업표준화법 등	공정위, 산업부 등
	안전성 보장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공정위,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등
지원 행정	정보 제공	표시광고법	각 부처 개별법령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 교육	소비자기본법	평생교육법	각 부처 공통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민법	공정위, 소비자원, 법원

- '0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공정위로 일원화
-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상호보완성



1

소비자 정책 종합추진체계 구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5 | 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8

-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시행계획(1년 단위) 수립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5명 민관 위원으로 구성, 소비자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 **[소비자 권리 선언]**

 - ▲안전권, ▲정보접근권, ▲상품선택권, ▲의견제출권, ▲보상청구권, ▲교육권, ▲소비자단체권, ▲환경권 등
- **[정보 제공·소비자 교육]**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가격·품질 비교정보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요정보 제공, 소비자 능력향상 교육 실시
- **[소비자 안전]**

소비자 위해의 시정요청,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 의무, 자진리콜, 리콜권고·명령,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운영
- **[피해 구제]**

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 소송 제기

2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

표시·광고법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5

▣ 표시·광고

- (표시) 용기, 포장 등에 쓰거나 붙인 상품 내용 및 특성, 거래조건 등 사항
- (광고) 상품 내용, 거래조건 등을 신문, 방송, 간판 등으로 알리는 행위

▣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

▣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임시중지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중요정보 고시 위반,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심결 사례

▣ M사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건(23.12월)

-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제내용·환급조건 등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
- 시정명령, 과징금(총 18.3억원)

3

불공정약관 심사

약관규제법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5

▣ 약관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예: 아파트분양 계약서, 버스운송 약관, 콘도회원 약관, 놀이공원 이용 약관)

▣ 약관의 부당성 판정 기준

- 일반적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시 불공정약관
- 개별 금지사항 위반한 조항은 불공정약관
 - ▲(사업자 면책조항)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계약해제·해지 제한)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조항
 - ▲(채무의 이행) 사업자의 급부내용 일방적 변경 등 조항
 - ▲(고객의 권익보호) 이유없이 고객의 권리 배제·제한, 기한의 이익 박탈 등 조항
 - ▲(의사표시 의제) 일방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 ▲(대리인의 책임 가중) 부당하게 대리인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
 - ▲(소송상 권리의 제한) 소제기 금지, 재판관할 합의, 입증책임 전환 등 조항

▣ [불공정약관의 효력] 당연 무효

※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

- ▣ [표준약관] * 사업자·사업자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청구 → 공정위 심사·제정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권리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해 놓은 표준이 되는 약관 (현재 77개 분야에 대해 제정·운용 중)

▣ 범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태료(표준약관 표시 부정사용 등 5천만원 이하, 약관 명시·설명 의무 위반 등 5백만원 이하)
- (형사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시정조치 위반)

심결 사례

■ M사 등의 약관규제법 위반 건('23.12월)

- ✔ 국내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이 아닌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 전환되게 규정하는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여 운영한 행위
- ➔ **자진시정 완료(심사절차 종료)**

4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5

-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

 - (전자상거래) 상품·용역 거래(주문·결제·이행)에 전자문서 처리가 이용되는 상행위
 - (통신판매) 인터넷, TV 등 비대면 방법으로 상품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예: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쇼핑 등)
 -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행위 (예: 오픈마켓, 가격비교 사이트 등)
- ▣ [소비자 철회권] 법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단순 변심)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 위반) 재화 등이 계약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 전자상거래사업자 등 금지사항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제 방해,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연락처 변경·폐지, ▲분쟁·불만처리 인력 및 설비 부족 방지,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구매제공을 강요, ▲무단으로 소비자 정보를 이용, ▲동의·고지 없는 무단 프로그램 설치
- ▣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의무이행, 시정명령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 임시중지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임시중지명령 위반 1억원 이하, 조사 거부·방해 5천만원 이하, 거짓 자료 제출 등 3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시정조치 위반 등), ▲3천만원 이하 벌금(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1천만원 이하 벌금(사업자 신원정보 거짓제공 등)

심결 사례

■ N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24.1월)

- ✔ N사가 온라인 PC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아이템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옵션들의 출현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116억원)

5

특수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방문판매법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0

- 다단계·후원방문·방문·전화권유·사업권유·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에 적용
- 다단계 및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등록(자본금 5억원 이상(후원방문 제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계약 전 정보 제공, ▲계약서 교부,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기준 변경 시 3개월 이전 통지
 - (금지사항)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후원방문 38%)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개별 상품가격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판매원(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등을 부과하는 행위 등
- 다단계 및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정보공개제도
 - 상호·주소 등 사업자 주요 정보, 후원수당, 판매원 수, 매출액 등 정보 제출 및 공개
- 범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의무이행, 시정명령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조사거부·방해 등 5천만원 이하, 거짓 자료 제출 3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미등록 다단계판매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다단계판매 계약체결 강요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다단계판매 변경사항 거짓 신고 등) 등

심결 사례

■ R사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23.12월)

- ✔ 다단계판매업자인 R사가 판매원에게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9억원), 법인 고발

6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할부거래법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0

할부거래·선불식 할부거래에 적용

- (일반 할부거래) 소비자가 대금 완납 전 재화·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2개월·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에 의한 거래
-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여행 등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에 재화·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등록 및 신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계약 전 정보제공, ▲계약서 교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
* 사업자 폐업·부도시 선수금의 50%를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전
- (금지사항) ▲거짓·과장·기만 거래, ▲청약철회·계약해제 방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제도

- 상호·주소 등 사업자 주요정보, 회계감사보고서·선수금 등 정보 제출 및 공개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시정조치(행위중지, 의무이행, 시정명령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지위승계 허위신고 등 5천만원 이하,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등 3천만원 이하, 계약서 미발급 등 1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대여 등), ▲1천만원 이하 벌금(계약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등)

심결 사례

■ H사의 할부거래법 위반 건('21.12월)

- ✓ H사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들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연 지급·미지급한 행위, ▲15일을 경과하여 대표이사 변경을 신고한 행위
- 시정명령, 과태료(8백만원), 법인 고발



4 경제력집중 억제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이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제도, ▲채무보증 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지주회사 제도,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제도 등이 있습니다.

1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공정거래법 제17조~제39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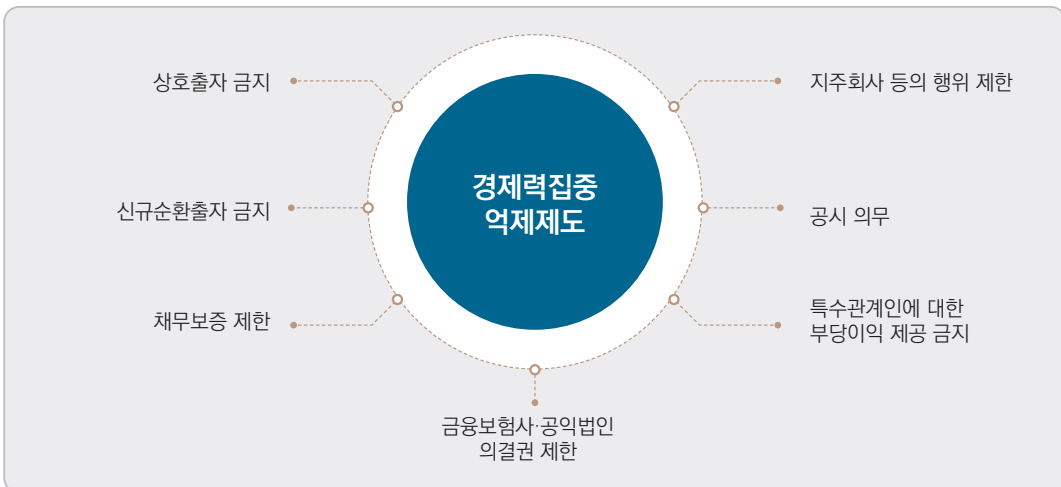
- **[적용대상]** ▲공정위가 지정하는 ^{매년 5월1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상출} 및 소속 계열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및 그 자·손자·증손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 (지주회사) 주식을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자회사 주식이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또는 최상단법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

↳ '사실상 지배'는 지분을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판단

- (지분율 기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 *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 및 임원 등 사용인
- (지배력 기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동일인이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

○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 주요 제도별 개요

주요 제도	주요내용 및 목적	적용대상	법위반시 제재조치
상호출자 금지 (법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출집단 계열회사는 자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회사 주식 보유 금지 두 계열회사 간 가공자본 형성(A↔B)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집단 확장 억제 	자산총액 GDP의 0.5% 이상 기업집단 (상출집단) 소속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관련금액 20% 이하) ▶ 형사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 2억원 이하 벌금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 금지 셋 이상 계열회사간 가공자본 형성(예:A→B→C→A)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집단 확장 억제 		
채무보증 제한 (법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출집단 계열회사(금융·보험사제외)는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 금지 연쇄·동반부실 방지, 문어발식 기업확장 억제,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방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법 제2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다만, 상장계열사가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동일인+동일인관련자) 합산 15%까지 행사 가능) 금융·보험사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기업집단 확장 억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법 제2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출집단 공익법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다만, 상장계열사가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행사 가능) 공익법인을 이용한 기업집단 확장 억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법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집단 계열회사가 총수일자본율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회사(또는 그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총수일자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공시집단) 소속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관련금액 10% 이하) ▶ 형사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 2억원 이하 벌금
공시 의무 (법 제26~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회사는 부채비율(부채액/자본총액×100) 200% 초과 금지,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자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일정비율(상장30%, 비상장50%) 이상 의무 보유, 자회사(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소유 금지 (100% 지분보유시는 가능)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관련금액 20% 이하) ▶ 형사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 2억원 이하 벌금

* '총수일자 사익편취행위'로도 칭하며,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와 합하여 '부당 내부거래'로 통칭함

심결 사례

① D사 상호출자 금지 위반 건('09.10월)

- ✓ D사가 합병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6개월(해소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행위
- ➔ 주식처분명령, 과징금(1.7억원)

② M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건('20.10월)

- ✓ 금융보험사인 M사가 계열사인 H사의 정기주총에 참가해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
- ➔ 시정명령

③ K사 채무보증 제한 위반 건('24.4월)

- ✓ K사가 계열사인 P사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1.5억원)

④ 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건('20.11월)

- ✓ K그룹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K사를 지원하기 위해 G그룹으로 하여금 계열사 A사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제공하는 대신 K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토록 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총 320억원), 법인·개인 고발

⑤ H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건('23.8월)

- ✓ H그룹의 최상단회사인 H사가 총수 2세 소유의 A사, B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고 A·B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총 608억원), 법인·개인 고발

⑥ I그룹 계열사의 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 위반 건('24.3월)

-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I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행위
- ➔ 시정명령, 과징금(14.8억원)

⑦ S사의 공시의무 위반 건('23.11월)

- ✓ S그룹 소속 S사가 소속 공익법인 S대학교와 거래하면서 사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는 행위
- ➔ 과태료(4천만원)

II 신뢰받는 기관 운영

1. 적법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조사
2.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3. 엄정한 과징금 산정·부과
4.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노력

1

적법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조사

조사총괄담당관 044-200-4670

- [조사의 성격] 피조사업체의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
- 적법 절차 및 조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운용
 - 「공정거래법」 및 「조사절차규칙(고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구분	주요 제도	내용
원칙	조사권 남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조사 실시 ▶ 조사 공문상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 실시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조사 수과정에 변호사 참여 허용
계획 수립	조사대상 선정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해 조사대상 선정 ▶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모집단, 선정기준 및 근거, 조사대상 업체 명단 등 명시 ▶ 조사계획 및 조사 관련 정보 보안 유지
조사 개시 단계	조사공문 교부·설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공문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목적*·대상**·방법 -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법률상 제재 규정 -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권리 * (목적) 관련 법 조항과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관련 거래 분야 등을 포함한 법 위반 혐의를 기재 ** (대상) 피조사업체 명칭,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준법지원부서 원칙적 조사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는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대상 부서에서 제외
	조사 시간 및 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 진행 ▶ 조사는 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공문 교부 후 조사기간 연장
	자료보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시 前 부서 책임자 등에게 전산·비전산 자료보존 요청서를 교부하여 협조 요청

구분	주요 제도	내용
조사 실시 단계	사전 협조 요청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사업체 책상·서랍·캐비닛·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에 부서 책임자 등의 사전 협조를 구한 후 실시 ▶ 피조사업체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조사시 관계자의 사전 협조를 구하거나 입회하에 실시
	자료복사 협조 의무	▶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 피조사업체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수집·제출 자료목록 교부 의무	▶ 조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종료 즉시 수집·제출자료 목록을 교부
	진술 확인 강요 금지	▶ 피조사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특정 진술 이나 확인 을 강요할 수 없음
	의견제출 및 진술권 보장	▶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등은 언제든지 의견제출 및 진술 가능
	일시 보관 물품에 대한 조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제출된 자료나 물품을 일시 보관시 조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여야 함
조사 종료 단계	성실 설명의무	▶ 현장조사 종료시 이후의 사건처리절차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여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애로·건의사항 신고절차 보장	▶ 피조사업체는 현장조사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신고 가능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를 위한 이의제기권리 보장	▶ 피조사업체는 현장조사 종료 후 14일 이내 에 조사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반환·폐기 요청 가능
사건 처리 단계	예비의견청취절차	▶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 등이 심사관 등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의견청취절차 실시
	사건처리 결과 통지의무	▶ 조사 결과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 그 내용, 근거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

2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1

○ 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운영

- 「공정거래법」 및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규칙(고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주요 제도	내용
의견 진술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前 구술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당사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자료 열람 또는 복사청구권	▶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청구 가능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 심의·의결 중 심사관의 조사 진행, 진술 청취 금지
심사보고서 등 송부 및 의견서 제출	▶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목록, 첨부자료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일정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
심의 부의	▶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 사건을 심의에 부의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권	▶ 피심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심사관에 대한 질문권	▶ 심사관의 진술 취지가 명백하지 아닐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심사관에게 질문할 수 있음
증거조사 신청	▶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피심인 의견진술	▶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피심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 부여
심의속기록 및 의결서 공개	▶ 위원회 심의속기록 및 의결서 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
위원회 회의 참관	▶ 누구나 참관 신청을 통해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 방청 가능 (선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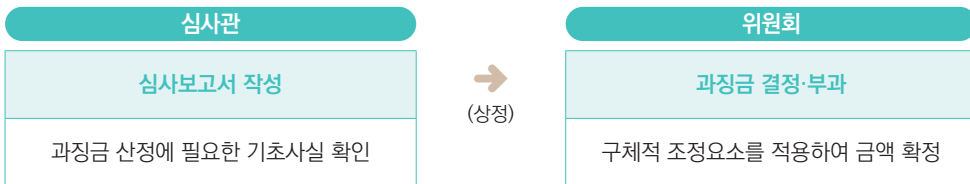
3

엄정한 과징금 산정·부과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1

- 공정위 과징금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9개 법률 위반시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산정·결정 절차(「과징금 고시」)



☞ 과징금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는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

세부 산정 절차



4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노력

송무담당관 044-200-4153

○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24.5% 수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30. 기준)	합계
공정위 처분 건수(건)	242	246	219	236	161	1,104
소제기 건수(건)	60	68	62	45	35	270
소제기율(%)	24.8	27.6	28.3	19.1	21.7	24.5

☞ 공정위 처분은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서는 최대한의 과징금 감경을 위해서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다투어보려는 것이 일반적임

○ 최근 5년간 공정위는 90.8%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

연도*	전부승소율(A)	일부승소율(B)	승소율(A+B)	전부패소율
2020년	70.9	17.7	88.6	11.4
2021년	82.0	10.0	92.0	8.0
2022년	70.9	20.9	91.8	8.2
2023년	71.8	18.8	90.6	9.4
2024년 (6.30. 기준)	83.7	7.0	90.7	9.3
2020년~ 2024년 평균	75.3	15.5	90.8	9.2

* 판결확정 연도 기준

※ 일부승소 사건은 대부분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조치수준(과징금액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임
→ 이 경우,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함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1. 성격 및 기구
2. 주요 연혁
3.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4. 관련 제도 - 동의를결

1

성격 및 기구

01 설립 목적 및 성격

○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집행
-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준사법적 기관**의 성격도 지님
 - 공정거래위원 임기·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대심구조 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 *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범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
 - 공정위 결정은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며, 불복하는 사업자는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

02 주요 기능

기능	정책분야	주요 내용
경쟁 촉진	경쟁정책	독점력 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등 시정,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	기업거래· 유통정책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정책	소비자 역량 강화 및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경제력집중 억제	대기업집단정책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부당한 내부거래 등 시정

03 소관 법률

○ 총 14개 법률 운용 중

-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5): 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③가맹사업법, ④대규모유통업법, ⑤대리점법
- 소비자 분야(9): ⑥소비자기본법, ⑦표시광고법, ⑧약관규제법, ⑨할부거래법, ⑩방문판매법, ⑪전자상거래법, ⑫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⑬제조물책임법, ⑭중대재해처벌법

법률명	목적	제정일(시행일)
①공정거래법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제재,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	'80.12.31. (81.4.1.)
②하도급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84.12.31. (85.4.1.)
③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	'02.5.13. (02.11.1.)
④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	'11.11.14. (12.1.1.)
⑤대리점법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	'15.12.22. (16.12.23.)
⑥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 소비자 정책의 종합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도모	'80.1.4. (82.9.13.)
⑦표시광고법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99.2.5. (99.7.1.)
⑧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 규제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86.12.31. (87.7.1.)
⑨할부거래법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91.12.31. (92.7.1.)
⑩방문판매법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91.12.31. (92.7.1.)
⑪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02.3.30. (02.7.1.)
⑫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	'99.2.5. (99.8.6.)
⑬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	'00.1.12. (02.7.1.)
⑭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21.1.26. (22.1.27.)

04 조직

▣ 위원회 구성(공정거래법 제57조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장관급)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부위원장**(차관급)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위원**(상임·비상임)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조직 및 정원('24.7월 기준, 649명)

- **[본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6국 3관 1대변인 43과 5팀 / 484명
- **[소속기관]**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165명

▣ 산하기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근거('87.7.1. 설립)
 -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 교육,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물품 등 시험검사, 소비자 정책 연구 등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근거('07.12.3. 설립)
 - 공정거래법 등 관련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탁 사항 등

조직도



2

주요 연혁

1980년대

- '80. 12. 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81. 4.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81. 4. 3. ▶ 경제기획원장관 소속 공정거래실 설치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5명)

1990년대

- '90. 4. 7. ▶ 경제기획원에서 공정위 분리
(사무처 신설 : 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 정원 221명)
- '94. 12. 23. ▶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차관급)
(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343명)
- '96. 3. 8. ▶ 장관급 격상
(소비자보호국, 하도급국 신설, 정원 385명)
- '97. 8. 12. ▶ 기획관리관, 심판관리관 신설
(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422명)

2000년대

- '07. 8. 7. ▶ 시장분석본부 신설
(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04명)
- '08. 2. 29. ▶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정책 기능 이관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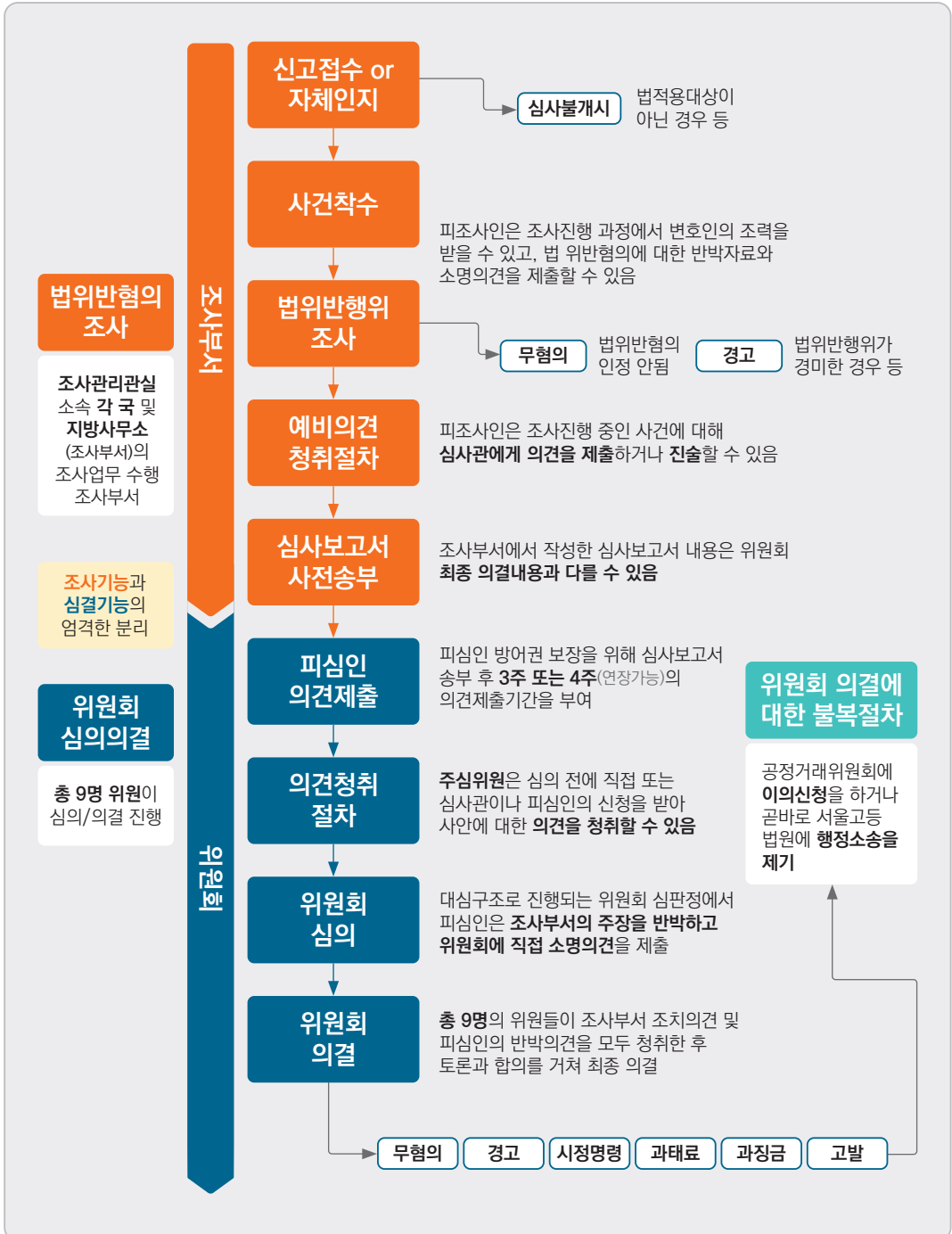
- '13. 3. 23. ▶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따라 유통거래과 신설
(5국 3관 1대변인 23과 11담당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3명)
- '13. 9. 17. ▶ 입찰담합감시과 신설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0명)
- '16. 12. 13. ▶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5국 3관 1대변인 26과 11담당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6명)
- '17. 9. 21. ▶ 기업집단국,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6국 3관 1대변인 42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01명)
- '18. 11. 19. ▶ 유통정책관, 기술유통감시팀 신설
(6국 4관 1대변인 44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48명)

2020년대

- '22. 12. 20. ▶ 기술유통감시과 신설
(6국 4관 1대변인 43개과 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52명)
- '23. 4. 14. ▶ 조사-정책기능 분리, 조사관리관 신설 등
(6국 3관 1대변인 43개과 3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53명)

3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4

관련 제도 - 동의의결

동의의결

-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소비자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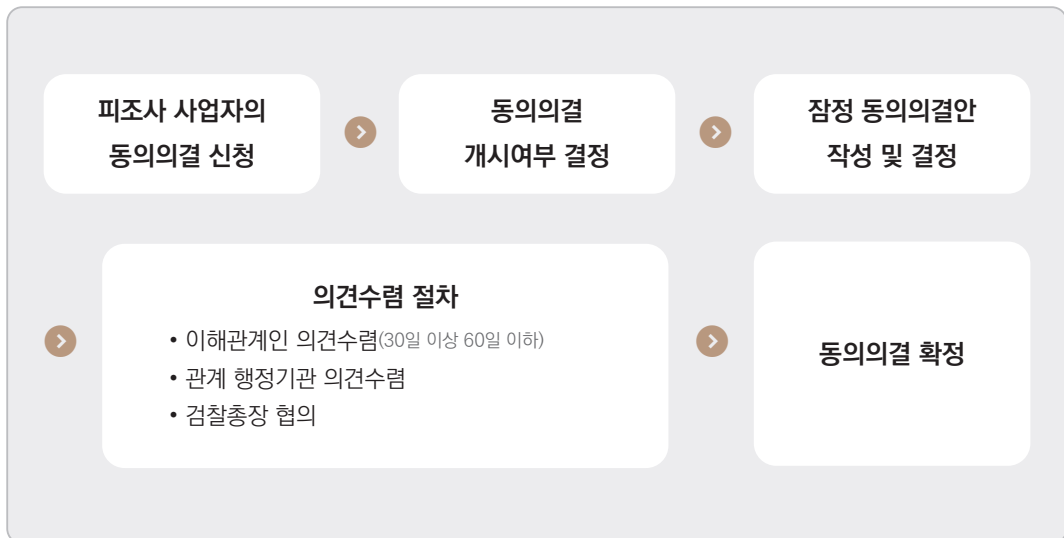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제90조), ▲하도급법(제24조의10), ▲가맹사업법(제34조의3),
- ▲대규모유통업법(제34조의3), ▲대리점법(제24조의2), ▲표시광고법(제7조의2),
- ▲방문판매법(제50조의3)

효과

- (소비자) 시정조치로는 어려운 가격 인하·손해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가능
- (사업자) 사업상 불확실성 조기 제거, 범위반 사업자의 이미지 훼손 방지
- (정 부) 피조사 사업자 동의를 얻어 원활한 법집행, 행정비용 절감

절차



한눈에 보는
공정거래제도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ww.ftc.go.kr



한눈에 보는
공정거래제도

Part 2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

I. 기업규제 합리화

II. 신속·정확한 법집행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

공정위는 ▲**기업활동 자유 보장**(기업규제 합리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신속·정확한 법집행) 두 가지 축으로 **역동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I. 기업규제 합리화

-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 ➔ **균형감** 있는 甲乙관계 제도 운영

II. 신속·정확한 법집행

- ➔ 시장의 반칙행위는 **일관되게 엄단**
- ➔ 단, **신속·정당한 조사**로 기업의 **불편·부당 소지**는 **최소화**
- ➔ **공정하고 정확한 사건처리**
➔ **높은 행정소송 승소율** 유지

①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 규율대상 합리화
- 대기업 투자·혁신 장애요인 제거
-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② 중소기업 경쟁법 규율 합리화

- 기업의 ESG 경영 지원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의 확대
- M&A 심사제도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지원

③ 균형감 있는 甲乙관계 제도운영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실시 및 적용예외 규정

①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집행

- 국내·외 기업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
- 거래질서에 영향이 큰 주요 사건 엄중 처리

② 신속하고 투명한 법집행

- 조직 개편을 통한 사건처리 효율성 극대화
- 기업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조사절차 개선

③ 법집행 신뢰성 제고

- 범위반 입증역량 강화, 심결의 품질 강화, 내실 있는 소송 대응 ➔ 높은 승소율 유지

I. 기업규제 합리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균형감 있는 갑을관계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 성장(scale-up)에 도움이 되도록* 대기업집단 규제를 완화

* 「역동경제 로드맵(24.7.3.)」 中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 대기업집단 규제 본연의 효과*는 살리되,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관점에서 규제완화 추진

* 기업집단의 변칙적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억제

| 세부과제 | ① 규율대상 합리화

- ② 대기업의 투자·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인 제거
- ③ 불필요한 기업 부담 완화

②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법 규율도 합리화

- 경영환경·경제규모 변동 추세, 글로벌 경쟁법 규제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전통적 경쟁법 규율의 합리화 노력을 지속

| 세부과제 | ① 기업의 ESG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해석 명확화

- ②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상향
- ③ 기업결합(M&A) 신고의무 합리화,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

③ 甲乙관계 분야 제도 설계 시에도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해관계 조율

-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등 乙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되, 급격·과도한 규제가 甲의 지나친 경영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정책 추진

| 세부과제 | 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적용예외 규정 설치

1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규율대상 합리화

01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의 합리적 기준·절차 마련
→ 지정 절차 전반의 투명성 및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 제고

-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국적 보유 동일인·자녀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에 따라 명확·합리적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4.5월)

-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하여 사익편취 우려 등이 희박한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
 - ※ (사례) '24년 대기업집단 지정시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
- 아울러,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확인·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절차적 권리도 확대하였습니다.

- ↳ 명확한 기준 제시 및 관련 절차 정비를 통해 동일인 판단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규율대상 합리화

02

사외이사 지배회사는
계열회사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범위에서 원칙 제외
→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영입**의 걸림돌 제거 및 **규제 부담 완화**

-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편입하던 종전 opt-out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opt-in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2.12월)

- (종전 제도의 문제점) 사외이사 임명 시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자동 편입되어 ▲중소·벤처기업 혜택 상실, ▲자료제출·공시 등 의무 발생
→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영입의 걸림돌로 작용

종 전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t-out) 원칙적 계열회사 편입 → 임원독립경영* 신청 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t-in)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 임원독립경영 요건** 미충족 시 편입

*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가 대기업집단 측과는 독립적으로 경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제도

**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임원 측이 동일인 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 보유, 임원 측 및 동일인 측 간 임원겸임·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

- 전문성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 영입이 활성화되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효율적·투명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규율대상 합리화

03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화를 추진 중입니다.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고정금액(자산총액 5조원)에서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 국가경제 규모를 반영하여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수를 합리화**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지정기준이 경제규모에 따라 탄력 조정될 수 있도록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고정된 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구체적인 GDP 연동비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회의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이미 GDP 연동방식으로 조정하였음

[종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24년부터) GDP의 0.5%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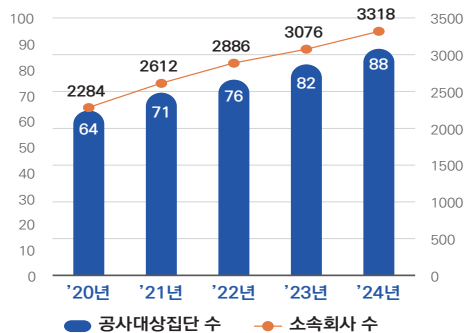
➡ 대기업집단 규제(공시의무, 사익편취 금지 등)를 적용받는 기업집단 수가 국가경제 규모를 반영하여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 GDP 연동비율별 시뮬레이션 결과

(21대 국회 발의안 기준)

- **A안** : (현행) 5조원 이상 → (개정안) GDP의 0.3% 이상*
* '21년 GDP 확정치 기준 GDP 0.3%는 6.2조 원, 현재 공시집단수 88개 → 적용시 72개 (16개 ↓)
- **B안** : (현행) 5조원 이상 → (개정안) GDP의 0.25% 이상*
* '21년 GDP 확정치 기준 GDP 0.25%는 5.2조 원, 현재 공시집단수 88개 → 적용시 85개 (3개 ↓)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증가 추이〉



1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혁신 장애요인 제거

04

일반지주회사 CVC의
출자·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한도 상향
→ **대기업**의 자금력·경영노하우를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투자 촉진**

-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외부출자 한도를 상향하고(최대 40%→50%),
해외투자 한도도 상향*(최대 20%→30%)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해외투자 한도 개정안은 해외 CVC의 평균 해외투자 비중(34.6%)에도 근접한 수치

↳ 외부투자자와 투자조합 공동운용(50:50 출자)이 가능해져 투자활동이 증대되고,
해외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CVC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입니다.

-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 형태로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외에 “창업기획자”*를 추가 허용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로, 벤처사·신기사처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등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 담당

↳ 대기업의 자금력 및 노하우가 혁신적 초기창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혁신 장애요인 제거

05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고, **규제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도 **법에 열거**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

- (의 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가 취득·소유한 국내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의결권 행사 가능)
- (문제점)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비금융업으로 분류되나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핀테크 등 금융·보험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종
- 규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법에 열거하면서 私금고화, 자금배분 왜곡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은 업종은 제외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 제도 취지와 무관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함으로써 금융 밀접분야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06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여 규제 부담 대폭 완화

※ 동일인·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출발점이 됨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친족 등)와 합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은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

- 친족 개념에 대한 국민인식 등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2.12월)

*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

- ↳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되어 자료제출·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총수 있는 66개 집단 친족 수 49.5% 감소('22년 기준 10,026명→5,059명)

1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07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공시 기준금액 상향, 주기 조정, 항목 간소화 등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

- (공시부담 완화) ①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상향(50억원→100억원), ②분기 공시항목(8개)을 年1회 공시로 조정, ③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임원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 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3.5월), ②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23.3월), ③공정거래법 개정('24.2월)

- (의무위반 제재 합리화) ①지연일수 3일 이내 50% 감경 등 과태료 감경기간 확대, ②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 근거 신설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하였습니다.

* ①과태료 부과기준 개정('23.3월), ②공정거래법 개정('24.2월)

↳ ▲공시 의무사항 축소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필요수준에 맞는 정확한 정보공개로 핵심정보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중소기업 경쟁법 규율 합리화]

기업의 ESG 경영 지원

08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여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글로벌 ESG 규제 준수(해외 공급망 실사의무 등)를 위한 필요최소 행위가
공정거래법령 위반 아님을 명확화 →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및
해외수출 장애요인 해소

- 기업이 협력업체 등에 대하여 ESG 규제 등 준수를 요구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심사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사항)

* EU 공급망실사법 등 ESG 규제 준수를 위해 협력업체에게 특정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의 범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ESG 관계법령 준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에서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사업자 경쟁법 규율 합리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외 확대

09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을 높였습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 매출액(구매액) 기준을 80억원(종전 40억원)으로 상향 →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활동** 촉진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24.1월)

* 종전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07년에 추정 제외기준을 40억원으로 규정한 이후 그간 경제규모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 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없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 상대적으로 소규모 혁신기업 등의 규제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사업자 경쟁법 규율 합리화]

M&A 심사제도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지원

10 기업결합(M&A)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 M&A 참여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24.2월)

- * ▲PEF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제외) 1/3미만 겸임,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이 약 42%를 차지('22년)



기업의 신고부담이 줄어들고 M&A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全사업자 경쟁법 규율 합리화]

M&A 심사제도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지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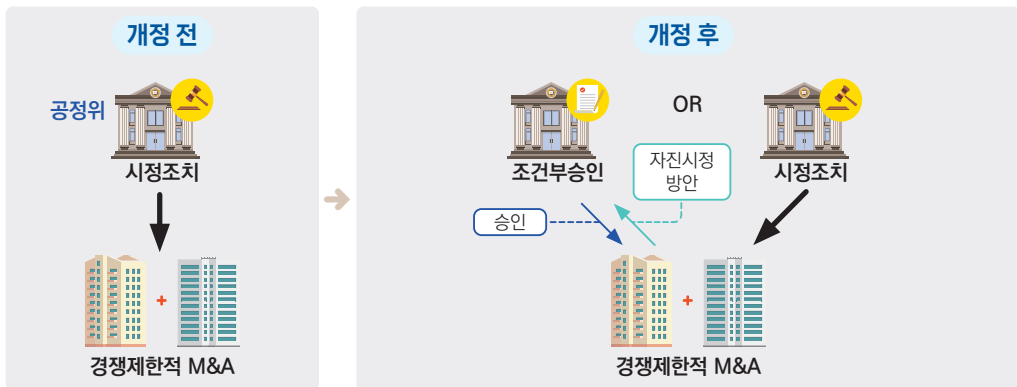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결합(M&A)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결합 당사자인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적 우려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이행 가능성 제고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조치를 설계함으로써, 현실적인 시정방안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시정조치
이행가능성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24.2월)

●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4.2월) 이후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공정위의 경쟁제한우려 통지방식,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평가방식 등



↳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시정조치에 담길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시정조치
이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균형감 있는 甲乙관계 제도운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실시 및 적용예외 규정

1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적용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원사업자측 의견을 반영**하여 예외규정 마련
→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원 이하), ▲당사자간 미연동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연동 계약 미체결 가능**

- 하도급계약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하여, 단기·소액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때에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어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 '23.7월)

*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의 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의무 부여

- 다만,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시하여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관련 제도 개선·운영 시 당사자간 이해관계 균형, 수범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과도한 기업부담 우려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신속·정확한 법집행

1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집행]

국내·외 기업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

13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동일한 잣대로 엄정히 법집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시장·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

○ 실제로, 국내·외 유력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집행 해오고 있습니다.

'22년 이후 사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건

(韓, '23.6월)

| 개요 |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인 가맹택시에 부당하게 콜을 몰아준 행위

| 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271억원, 법이고발



구글의 경쟁 앱마켓 출시방해 건

(美, '23.7월)

| 개요 |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게임 출시를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

| 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421억원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건

(韓, '24.6월 심의)

| 개요 |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제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한 행위

| 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1,400억원(잠정), 법이고발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위반혐의

(中, '24.2월~ 조사중)

| 개요 |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증개사로서의 의무 위반, 상품가격 관련 허위·기만, 쇼핑물 회원 이용 관련 불공정약관 등 혐의

| 조치 | 현재 조사 진행중

'22년 이전 사건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 건

(美, '17.1월)

| 개요 |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및 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로서 경쟁 칩셋사에게 SEP 라이선스를 거절한 행위 등

| 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1조311억원



구글의 경쟁 OS 출현 방해 건

(美, '21.12월)

| 개요 |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

| 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2,249억원

1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집행]

거래질서에 영향이 큰 주요 사건 엄중 처리

14

거래질서에 영향이 큰 사건은 엄중 조치하여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 시장 거래질서에 영향이 큰 주요 사건은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중 조치
→ 소비자·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막고 **유사 범위반** 발생도 **선제적으로 예방**

- ▶ 게임 확률형 아이템, ▶ 민생 분야 입찰담합, ▶ 부당한 '벌떼입찰' 관행 등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는 엄단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거짓·기만 사례 (24.1월)

- ✓ (개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이 온라인 PC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옵션이 적게 나오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림
- ➔ (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116억원

민생 밀접분야 입찰담합 적발 사례

- ✓ (개요) 철근(22.11월), 예방접종 백신(23.8월), 빌트인 가구(24.3월)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져온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
- ➔ (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05억원 (철근 2,565억원, 예방접종 백신 409억원, 빌트인 가구 931억원)

'벌떼입찰'을 통한 총수2세 소유회사 일감몰아주기 사례 (23.8월)

- ✓ (개요) 기업집단 호반은 소위 '벌떼입찰'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공공택지 대부분을 총수2세 소유 계열회사에 몰아줌
- * 공공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회사 및 협력관계에 있는 비계열사까지 동원하여 입찰에 참가시킴
- ➔ (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608억원

2

[신속하고 투명한 법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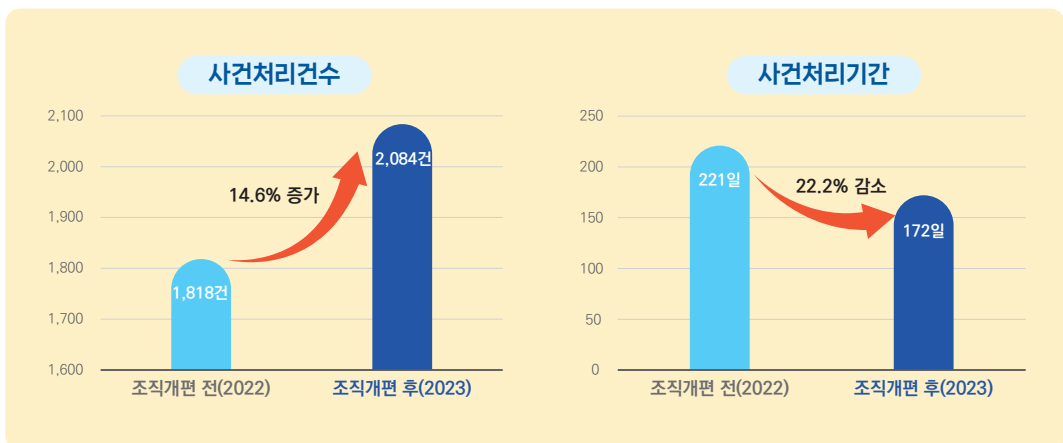
조직개편을 통한 사건처리 효율성 극대화

15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더욱 빠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정위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고, 조사부서가 조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건처리 신속화** 도모

- ▲조사-정책기능 분리, ▲집중적인 사건처리 관리 등을 통해 **사건처리기간이 22.2%(49일) 단축**되어 조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신속한 시정이 필요한 사건 조사는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신설된 **전담팀(중점조사팀)**을 통해 집중·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사례) ▲OTT·음원서비스·온라인 쇼핑몰 분야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 관련 조사,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정보 거짓 고지 관련 조사 등



2

[신속하고 투명한 법집행]

기업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조사절차 개선

16

피조사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권 행사범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피조사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수궁하는 조사환경** 정립

- ▲ 조사공문에 조사목적·범위 등 구체화, ▲ 조사기간 연장사유 마련, ▲ 조사목적과 무관한 수집자료 반환, ▲ 조사단계부터 기업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한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을 통해 피조사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대한상의·한경협 등 외부에서도 신규절차 도입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

구분	주요 내용
현장조사 공문 구체화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범위반협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거래분야·유형 기재
조사기간 연장사유 기재	조사기간 연장 공문에 조사기간 연장 사유 적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내부)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선별·반환 (외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범위를 벗어난 제출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의 공식적인 반환 요청(이의제기) 절차 도입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 기업과 담당 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 도입

3

[법집행 신뢰성 제고]

내실 있는 소송 대응

17

조사-심의-소송 쉰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엄격한 범위반 입증 역량 강화(조사단계), 심결의 품질 강화(심의단계), 내실 있는 소송 대응(소송단계)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 다양한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노력을 통해 최근 5년 확정판결 건수 기준, 90.8%의 높은 승소율(일부승소율 포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부승소율의 경우에도 2024년 83.7%로 직전 4개년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 조사단계 | 범위반 입증 역량 강화(증거 확보 및 분석 능력), 법원 판결에 대한 직원 이해도 제고
- | 심의단계 | 충분한 공방기회 부여 및 면밀한 심의, 쟁점 적은 사건은 신속 처리
- | 소송단계 | 소송대리인 역량 강화, 중요사건 소송수행 T/F 내실화 등

-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 1조 9,860억원 중 94.9%(1조 8,845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24. 6. 30. 기준)

기준	확정연도	승소	일부승소	승소 소계	패소	계
건수	'20~'24년 평균	296	61	357	36	393
		75.3%	15.5%	90.8%	9.2%	100.0%
	'24년	83.7%	7.0%	90.7%	9.3%	100.0%
	'23년	71.8%	18.8%	90.6%	9.4%	100.0%
	'22년	70.9%	20.9%	91.8%	8.2%	100.0%
	'21년	82.0%	10.0%	92.0%	8.0%	100.0%
과징금액	'20~'24년 평균	1,884,469	-	-	101,622	1,986,091
		94.9%	-	-	5.1%	100.0%

2024년 공정위 주요 승소 건
(확정판결 기준)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담합 건(617억원),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원), ▲기업집단 한화 부당지원 건(229억원) 등